

## 알아봅시다... 공무원 행동강령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한 경우, 하급자는 사유를 소명(문서 또는 전자우편)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

### 부당한 지시의 판단 기준

- ◆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 ◆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 ◆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 부당한 지시 예시

-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
- ◆ 수학여행 업체 선정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 ◆ 포상대상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초 평가기준과 달리 특정인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상향 기재토록 지시

### 부당한 지시 관련 Q&A

1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는?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2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른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 ☞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 청탁금지법 Key Point

### ▶▶ '직접적인 이해관계' 란?

- ◆ 직무와 대가관계 및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계**
-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와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뿐만 아니라 어떠한 금품도 수수 금지
- ※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단순 직무관련자 사이라도 현금 및 유가증권(상품권, 기프트콘 등과 같이 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선물'로 제공 금지

직접적인 이해관계	제공자	학생, 학부모	대학(원)생	납품업체 직원	민원 신청자	물품생산 업체임원	고소인, 피의자	관내 변호사
	제공 대상자	교사 (감독,코치)	대학교수	계약업무 담당자	담당 공직자	물품검사 담당자	담당 수사관	해당법원 관(검)사

#### 1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음료수 1박스 정도를 선물로 드려도 되나요?

☞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담당하는 담임선생님과 학생·학부모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선물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학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체로부터 3천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약관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이므로 소액의 금품이라도 절대 수수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동일하니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수수불가

### ▶▶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사건내용	수사·재판 결과
담임교사 A에게 학부모 B가 SNS로 기프트콘(○○커피 그린티 카푸치노Tall 6개)을 보낸 것을 교사 A가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선물취소를 통해 반환한 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함	학부모: 과태료 부과(3배, 12만원)
00중 졸업앨범 납품업자가 학교 교직원 A의 책상위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고, 이에 교직원 A는 제공자가 졸업앨범 납품업자 B임을 확인하여 반환하고 신고함	납품업자: 과태료 부과(3배, 60만원)

## 교육청 청렴행사 홍보



2019년 학교장·고위공직자 청렴연수  
(2019.2.25.)



2019년 제1회 시민감사관 워크숍  
(2019.2.15.)

## 2018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 교무·학사 분야

####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절

☑ 주의

- 2018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 한문 과목을 폐지하고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하면서 사전에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없이 2017.12.27. 개최한 ‘2017학년도 교육과정위원회(교장 등 교원 10명)’의 협의로 결정하였고, ‘2018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2018학년도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난 후인 2018.4.4.에 자문함



■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초·중등교육법」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 학생 출석인정 출결처리 부적절

☑ 주의

- 2018학년도 출결상황을 관리하면서 A학생(결석기간: 2018.4.12.~4.13.) 큰아버지 사망에 따른 인정결석의 근거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주5일제 전면 실시학교는 학생 부모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1일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해함 함에도 불구하고 1일을 초과하여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학교생활기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학생의 출결 상황 관리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는 등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부산광역시 중등 학적 관리 매뉴얼」

#### ■ 학업성적평가 업무 수행 부적절

☑ 기관주의

- 2016~2018학년도에 교사 다수가 담당과목의 학업성적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필평가 문항 출제 시 역배점을 부여함



■ 원칙적으로 배점은 난이도(어려움, 보통, 쉬움)에 따라 배점하여야 하며, 역배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 문항 당 두 개 이상의 성취기준이 포함되어 문항의 중요도가 큰 경우에 한한다.

■ 「2016~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인사, 복무 분야

### ■ 기간제교사 채용 업무 소홀

 주의

- 2015~2018학년도에 14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절차상 생략할 수 없는 수업실연을 하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을 실시함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수업실연, 면접심사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 「유·초·중등(특수)학교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

### ■ 각종 인력 채용 업무 소홀

 기관경고

- 2014~2018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시 근무기간이 단절된 교원(3~12개월)을 채용하면서 과거 계약 시 첨부한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재첨부하여 계약함
- 2017.2월 및 3~6월 두 차례에 걸쳐 시교육청 행정관리과에 승인요청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실무원 채용업무를 진행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임용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격사유를 조회(아동학대 범죄, 성범죄 포함)하여 채용한다.

- 연도 중 교육공무직원 정원 범위 내 결원 발생 시 직종별 관리부서로 채용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신규 채용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채용 승인 인원, 기간, 채용 방법 등을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초·중등(특수)학교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
- 「교육공무직원 채용 업무 계획(부산광역시교육청)」

### ■ 교육공무원 병가 사용 부적절

 주의

- 교사 ○○○는 2018. 4. 16.~6. 12.까지 60일간 병가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자녀 치료를 위해 홍콩 및 일본으로 2회 출국함
- 교사 □□□가 2016년 60일 1시간 10분, 교사 ◇◇◇가 2017년 60일 3시간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60일 초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병가를 허가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근무상황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